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청서식 및 그 밖에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대상 법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8호, 안 제8조의2제1항, 안 제10조의3제1항, 안 제10조의4제1항제2호마목 및 제3항, 안 제15조제3항, 안 제17조제3항)

각종 신청서식, 설립인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된 사무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
가 여부 통지를 하도록 함

다. 기타 법령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중소기업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0조의4제3항, 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3)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갈음하여 통합 공시를 하려는 경우의 공
시 의무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이 있는 자 및 규제의 재검토 의
무자를 중소기업부장관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기업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6. 8. ?? ~ 9.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8호,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1항제2호마목 및 제3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의3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u>총리령</u> 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 ~ 7. (생략)			-----	-----
8. 그 밖에 <u>총리령</u> 으로 정하는 서류			-----	-----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u>총리령</u> 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	-----
1. ~ 3. (생략)			-----	-----
② (생략)			-----	-----
제10조의3(보건 · 의료조합의 의		제10조의3(보건 · 의료조합의 의	-----	-----

는 사항

3. (생략)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중소벤처기업부령-----

-----.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
---.

1. ~ 3.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생 략)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20일”은 “60일”로, “보건·의료조합”은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로 본다.

③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전국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전국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

③ -----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

1. ~ 3.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432